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5. 23 선고 2023가단10676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

담당변호사 고영채, 박세형, 방수환

피 고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

변 론 종 결 2024. 4. 18.

판 결 선 고 2024. 5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7,249,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4. 20.부터 2024. 5. 23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5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0,080,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 사실

가. 원고 및 B의 C에 대한 채무 및 원고 및 D의 근저당권 설정

①주식회사 E(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)는 2017. 9. 14. ‘C이 E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 E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부담하게 되는 1억 2,000만 원을 지급하기’로 C과 약정하였다.

②원고와 B는 같은 날 E의 C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 또한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2018. 4. 30. 원고는 아산시 F아파트 G호(이하 ‘이 사건 F아파트’라 함)에 관하여, B의 딸 D는 아산시 H아파트 I호(이하 ‘이 사건 H아파트’라 함)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2,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C에게 설정해 주었다(다만, D는 채무자를 B가 아니라 D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). 그 후 D는 2019. 6. 12.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H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,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(앞에서와 같이 채무자를 B가 아니라 D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).

나. 피고의 C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확정

피고는 E 및 C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에서 ‘E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76,602,771원 및 그 중 275,647,5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피고의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기등기

①피고는 2019. 10. 7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34485호로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D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(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B에 대한 채권인데 D의 이 사건 H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를 D로 기재하였다)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.

②피고는 2020. 7. 17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타채61825호로, 2021. 7. 26. 같은 지원 2021타채67783호로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.

라. B의 변제 및 공탁

①B는 피고에게, 2020. 7. 31. J을 통하여 10,000,000원을, 2021. 12. 9. E를 통하여 15,000,000원을 각 지급하였다.

②피고가 이 법원 K로 이 사건 H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B는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자 2022. 8. 12. D 명의로 70,869,127원을 집행공탁하였다. 피고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으로 위 공탁금에서 68,037,536원을 배당받았다.

마. 임의경매 및 배당

피고는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2023. 2. 9. 114,211,833원을 배당받았다(이 법원 L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음, 갑3 ~ 6, 8 ~ 11호증(가지번호 포함), 을 제1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피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C의 원고 및 B에 대한 1억 2,000만 원의 채권에 한정된다.

피고는 B로부터 합계 93,037,536원(= 10,000,000 + 15,000,000 + 68,037,536)을 받았으므로 C의 원고 및 B에 대한 채권의 잔액은 26,962,464원(= 120,000,000 - 93,037,536)이다.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F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6,962,464원을 배당받아야 함에도

114,211,833원을 배당받아 87,249,369원을 초과 배당받았다.

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배당받아 부당이득한 87,249,369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. 4. 20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. 5. 2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.

판사 이원신